

충청북도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매매용중고자동차에대한도세
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1년 12월 21일

나. 회부일자 : 1991년 12월 23일

3. 제안이유

- 적용시한 만료(1991. 12. 31)됨에 따른 시한연장임.
- 목적 : 무적차량방지와 중고자동차 거래질서 확립

4. 주요골자

- 중고자동차 매매업자가 매매를 위하여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취득세·등록세를 면제
- 매매용 중고자동차 등록시는 등록세 경감 : 1,000분의 50 → 1,000분의 10으로

5. 검토의견

-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허가를 받은자가 매매에 공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하고 있으나 시행기간이 1991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시행기간을 연장개정하는 것으로 중고자동차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무적차량 방지로 자동차세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충청북도중고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중고자동차에 대한 도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를 개정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